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필기시험 지필시험(PBT) 시행 직종 -

2025년도 하반기 및 2026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필기시험 지필시험(PBT) 시행 직종)을 「간호법 시행령」 제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2.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1. 응시자격

시험직종	응시자격
간호사	·「간호법」 제4조, 동법 부칙(법률 제20445호, 2024. 9. 20.) 제3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제9조, 「의료법」 부칙(법률 제11252호, 2012. 2. 1.) 제2조 또는 「의료법」 부칙(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간호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가. <응시자격 관련 전직종 공통 안내사항>

-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2026년 2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그 졸업예정시기에 해당 학위등록을 필한 자(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다만, 졸업예정시기에 졸업요건(학위등록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에는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면허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를 접수함에 있어 응시자격 확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응시자격 등을 확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자격 확인 미비에 따른 불이익(응시결격으로 인한 응시제한 및 합격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격사유 기준일은 시험 응시제한 결격사유의 경우 시험시행일로 하고, 면허(자격) 결격사유의 경우 면허(자격)증 발급 신청일로 합니다. 단, 법령 상 결격사유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해당 법에 따르도록 합니다.

나. <시험 직종별 안내사항>

-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1994년 7월 8일 당시에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자로서 2026년 4월 졸업예정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2026년 4월말 이전에 해당 학위 등록을 필하거나 졸업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합니다.

2. 시험일정

시험직종(횟수)	응시원서 접수기간	응시수수료	시험장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예정일	필기시험 지역
간호사(제66회)	25.10.14.(화)~21.(화)	추후공지	25.12.4.(목)	26.1.23.(금)	26.2.13.(금)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3. 접수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26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https://www.kuksiwon.or.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단,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단,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간편결제 감면 자격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는 결제 진행 과정에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응시수수료 전액 감면 ※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파일: 276×354픽셀 이상 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 1매(3.5cm×4.5cm)

※ 단, <외국학교 등 졸업자>의 경우는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접수 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자격관리부(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시원을 방문하여 필수서류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하며, 이미 서류를 제출하여 응시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 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취소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마. 필기시험은 시험장 선택제를 시행하며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 방안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 필기시험장소 변경은 다음과 같이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또는 전자우편 신청은 불가합니다.

구분	신청방법(인터넷)
○ 타 지역으로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장소 공고 7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 • 응시표 출력일 이후 시험시행일 5일 전까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동일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표 출력일부턴 10일 이내에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지역(시험장)변경] 메뉴를 이용하여 신청

- ※ 희망 응시지역 내 시험장 또는 희망 시험장에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변경 가능
- 사.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1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단, 수기형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 20일 전까지, 점자 또는 음성지원컴퓨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 신청해야 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보건의료인국가시험 편의제공 대상자 지정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수수료는 응시수수료 결제 시 ‘감면 자격확인’을 통해 전액 감면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기간 내에 별도 신청을 통해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절차 등은 [국시원 홈페이지-응시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기간: 응시원서 접수 시작일부턴 마감일 이후 7일까지

5. 필기시험 과목 및 시험시간표

시험직종 (총점)	교시	시험과목(문제수)	응시자 입장 완료시간	시험시간	1문제당 배점
간호사 (295점)	1	1. 성인간호학(70) 2. 모성간호학(35)	08:30	09:00~10:35 (95분)	1점
	2	1. 아동간호학(35) 3. 정신간호학(35) 2. 지역사회간호학(35)	10:55	11:05~12:40 (95분)	
	점심시간		12:40 ~ 13:40 (60분)		
	3	1. 간호관리학(35) 3. 보건의약관계법규(20) 2. 기본간호학(30)	13:40	13:50~15:10 (80분)	1점

※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 법률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는 시험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기준으로 출제됩니다.

6. 실기시험 범위 및 응시자 준비물: ‘해당없음’

7. 합격자 결정방법

시험직종	합격자 결정방법
간호사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험문제 및 정답의 직종별 공개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개여부	시험직종
공개	간호사

○ 필기시험 정답의 공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로부터 5일간 공개하며, 일정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은 시험문제지의 ‘응시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최종 정답 발표로 이를 대신합니다.
- 이의신청 기간 이후 제기되는 의견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나.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시험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 복제, 배포, (전자)출판 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실기시험 채점(기준)표 및 실기제작 모형(결과)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일 응시자 입장완료시간(시험시간표 참조)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 합니다. 아울러 시험일 1교시 시험에 결시한 자는 이후 시험교시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
-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타 시험장에서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시험장의 경우 시험시작 1시간 40분 이전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필기도구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주민등록증(유효기간 내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 운전면허증
 - 여권(만료일 이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대한민국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신분증으로 인정)
 - 국가보훈등록증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등록증 ■ 영주증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카드)
 - 청소년증(유효기간 내의 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 ※ 위의 신분증 중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확인서비스 포함)도 인정
-

- 응시표가 없는 경우, 시행본부에서 응시번호만 확인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바. 답안카드의 작성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해야 하며, 기타 필기도구(연필, 적색펜 등)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는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채점합니다.
-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연필, 적색펜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색깔과 상관없이 예비마킹을 할 경우에는 중복 답안 등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카드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점'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필히 수정테이프를 깨끗이 지워야 합니다.
- 답안카드는 구기거나 이물질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 답안카드에는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정답 외에 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별첨4'의 답안카드 견본은 참고용이며,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 답란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카드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답안카드를 교체 할 수 있습니다.
- 수정테이프는 응시자가 요구 시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며,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 테이프도 사용 가능합니다.
-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답란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불완전한 수정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테이프가 아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답안 작성 및 표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합니다.

아. 답안카드에 시험직종, 교시, 문제유형, 성명, 응시번호 등을 표기하지 않거나, 틀리게 표기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중에는 어떠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차.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와 함께 문제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시험직종은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교시 성적을 '0점' 처리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시험시간에는 답안카드 작성시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잘 배분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시간 중에는 퇴실하지 못하므로, 시험 전에 과도한 수분섭취를 자제하고 배탈 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설사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실에 시계가 있더라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 통신 등이 가능한 시계(스마트시계 등)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발견될 시에는 부정행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파.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 점심시간이 포함된 시험직종(간호사)의 응시자는 도시락 및 음용수를 직접 개별 지참하시고, 식사 후 시험장내에 용기 및 음식물쓰레기를 방치하지 마시고 직접 회수하여 최종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험실내 응시자 개인물품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응시자는 개인물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44-4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부정행위 및 응시자 준수사항

가. 부정행위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며,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향후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자의 기준

'부정행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
2. 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손동작, 소리 등으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답안카드, 실기작품 및 그 제작방법, 시험기기로 작성하는 답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문제지(시험기기를 포함한다)를 보고 자신의 답안을 작성(제작)하는 행위
4.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5.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및 도움을 주는 행위
6. 다른 응시자와 답안을 교환하는 행위
7. 다른 응시자와 성명 또는 응시번호를 바꾸어 기재한 답안을 제출하는 행위
8.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단, 문제지를 공개하는 시험은 제외한다)
9. 시험 전·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가. 대화, 쪽지, 기록, 낙서, 그림, 녹음, 녹화
 - 나. 홈페이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등에 게재 및 공유
 - 다. 문제집, 도서, 책자 등의 출판·인쇄물
 - 라. 강의, 설명회, 학술모임
 - 마. 기타 정보전달 방법
10.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
11.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 또는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12. 응시원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한 행위
13.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14. 컴퓨터시험(CBT) 중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등)를 시험기기에 연결하는 행위
15. 그 밖에 부정행위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등에 의거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합니다.

응시자 준수사항의 기준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아니한 행위
2.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행위
3. 시험 감독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시험실에서 퇴실한 행위
4. 시험 감독관의 본인 확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
5. 시험 감독관의 소지품(부정행위자의 기준 제10호의 물품 제외)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소지품을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휴대한 행위
7. 실기시험 시행 중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낙서, 그림, 메모 등의 형태로 종이 등에 적거나 신체에 기록하는 행위
8. 시험장에서 감독관 또는 다른 응시자 등 타인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피해를 주는 행위
9. 그 밖에 원장이 정한 응시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

10. 합격자 발표 및 면허(자격)증 교부신청

가. 합격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https://www.kuksiwon.or.kr>)
- 휴대폰 문자(SMS) 또는 카카오톡 알림톡 통보(응시원서 접수 시 휴대폰 연락처 기재자에 한함)
※ 국시원에서 실시하는 합격자 통보 외 무단으로 휴대폰 문자(SMS) 등을 유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음.

나. 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하여야 면허(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호사> 국가시험 합격자는 「간호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면허교부 신청을 합니다.

다. 합격자 사정은 채점관리시스템에 의해 전산채점 처리됩니다.

라. 본인의 성적은 합격자 발표 후 부터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 합격자 발표 후에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응시결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바. 본인의 답안카드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답안카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희망일 1일 전 18시까지 [국시원 홈페이지-면허·자격·증명서-답안카드 열람 방문신청]을 통해 예약하고, 회신을 받은 후 열람일정을 확정하도록 합니다.
- 답안카드 열람 일정을 확인한 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시원이 안내한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답안카드 열람신청서'를 작성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별첨1>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필기시험 시험장 선택제 운영방안 안내

<별첨3>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장애인 응시자 등 편의제공 지침

<별첨4> 답안카드 견본

마침